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제재사유에 ‘정당한 사유’ 추가〉

■ 정부 발의(의안번호 제471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 부
- (2) 제 안 일 : 2024. 10. 16.
- (3) 회 부 일 : 2024. 10.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중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u>	3. <u>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함)에서는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가 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이론 교육 4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해야 함(참고 자료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¹⁾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활동지원사)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사”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은 현재 시·도별로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례는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 지정취소 1건이 있었음.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시·도별 개소 수 현황>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66	10	4	3	2	2	2	3	2	11	2	2	3	4	3	7	3	3

주1): 2024년 6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현황>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9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	-	-	-	-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	-	-	-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1(서울)	-	-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합계	-	-	-	1	-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중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 처분을 개선함으로써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

는 취지임.

-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음(참고자료 2: ‘정당한 사유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 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7호·제8호·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참고로, 개정안은 국정과제 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관련 허가·등록 등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법령에 대한 소관부처 전수조사 및 과제발굴을 통한 정부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같은 취지로 제22대 국회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는 정부 발의 법률안 계류 현황>

소관위원회	의안번호 및 의안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0470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08]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9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98]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9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0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220470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047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24]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22047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1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22047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22047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047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3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20474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7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220480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후 정리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7.>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제29조 관련)

1.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외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40
현장실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50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장애·활동지원의 이해 및 활동보조서비스 내용 등	32
현장실습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10
계		42

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론교육·실기교육의 세부 과목, 세부 과목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운영기준

가)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퍼센트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2)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의 장은 다)에 따라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2) 현장실습 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에 받아야 한다.

나) 현장실습은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이어야 한다.

라)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아야 한다.

마)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다)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은 사람의 현장실습 수행 사실을 그 사람이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보수교육

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활동지원기관은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여부는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하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한다.

〈참고자료 2: ‘정당한 사유’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시행 2004. 1. 20.] [법률 제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②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판시사항】

- [1]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채 3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